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위한 시민행동 안내서

21대 총선, 평등을 위해 일 할 정치인을 뽑읍시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2020년 4월 1일 발행 ●

기대와 달리 인권분야의 큰 성과없이 막을 내린 20대 국회,
이 다음 4년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혐오에 편승하고 차별로 표를 얻는 정치인이 아니라,
4년동안 평등을 향해 달려나갈 정치인들이
21대 국회를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지역구 후보 총 1,118명, 비례후보 35개 정당 312명.

평등일꾼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가기 전
살펴볼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차별과 혐오 없는 선거를 위해
시민들은 어떤 직접행동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해보아요!

STEP1.

투표소에 가기 전, 우리가 함께 체크해볼 사항!

가. 우리 동네 지역구 후보자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 정보 바로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CLICK!
-------------	---

나. 지난 4년 동안의 의정생활은 어땠을까요?

의정보고서 보러가기	국회의원 정책자료 CLICK!
------------	-------------------------------------

다. 차제연이 꿈은 20대 국회 3대 악법에 공동발의한 의원과 인권침해적인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은 누구일까요?

20대 국회 3대 악법+정책세미나 리스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CLICK!
------------------------	-------------------------------------

[참고]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CLICK!
------------------------------	--------------------------------------

라. 투표용지는 두 장! 정당투표를 어디에 할지 고민된다면?

각 정당의 주요 정책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CLICK!
------------------	--

-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 정책 | 총선공약집 | 정당의 윤리강령 (뒤에 이어집니다!)

STEP2.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혐오표현!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Q. 선거현수막과 집으로 배달온 공보물, 후보자 토론회에서 혐오표현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자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책임을 지닌 주요 **정당**, 선거 관련 보도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사** 그리고 **심의기관들**의 담당부서와 근거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어디에 신고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CLICK!
	자유의견	CLICK!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묻고답하기 게시판	CLICK!
	대표 이메일	debates@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	CLICK!
	대표 이메일	iendc@iendc.go.kr

2) 무엇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혐오표현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 표현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이 아님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근거] 헌법 제21조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혐오표현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와 투표를 관리해야 하는 책무와 합치되는 것임을 요구!

[근거]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근거]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나아가 혐오표현에 대한 해악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며,

[근거]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 및 고발조치 요구

[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근거]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근거] 공직선거법 제96조 :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근거] 공직선거법 제140조 :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나. 각 정당

1) 어디에 신고하나요? (원내 주요 정당)

① 더불어민주당

민심소통	CLICK!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CLICK!



차별금지 규정

[강령]

11.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평생 돌봄 체계를 실현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

③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또는 출생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①당원은 성 비하 발언, 직·간접적인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미래통합당

제보센터

[CLICK!](#)



차별금지 규정

【윤리강령】

- 우리는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
- 우리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 ②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 ④당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③ 민생당

자유게시판	CLICK!
대표 이메일	futureparty112@gmail.com



차별금지 규정

[윤리규범]

제2장 일반 윤리기준

제5조 (품위유지) ③당원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여성,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비하 하는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개별 윤리기준

제19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신고 및 징계) ①누구든지 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정의당

대표 이메일	admin@justice21.org
--------	--



차별금지 규정

[강령]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⑤ 민중당

대표 이메일

theminjungparty@gmail.com



차별금지 규정

[강령]

강령 7.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며, 누구나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를 실현한다.

민중당 성평등 강령

민중당은 성별, 성적체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며 성을 매개로 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건설한다.

⑥ 국민의당



차별금지 규정 : 차별금지와 관련한 당헌 당규 부재

2)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각 정당의 강령, 기조, 총선 공약, 윤리 강령을 근거로 혐오 표현이 해당 정당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행위자(후보자)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징계 등)를 취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다. 언론사 및 심의기관

1) 어디에 신고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LICK!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CLICK!
언론중재위원회	심의1팀	T. 02-397-3191~5
		F. 02-397-3089
		E. pac3191@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신청	CLICK!
	심의2팀	T. 02-397-3151~7
		F. 02-397-3089
		E. pac3061@pac.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	CLICK!
	대표 이메일	iendc@iendc.go.kr
각 방송사 시청자게시판	KBS 시청자권익센터 시청자청원	CLICK!
	MBC 시청자소통센터	CLICK!
	SBS 열린TV 시청자 세상	CLICK!

2) 무엇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매체별 심의기관은 차별과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해악이 됨을 인식하고, 효과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빠른 심의를 통해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며,

- 각 언론사에는 혐오표현과 발언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취재를 통해 허위사실을 밝히고,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보도가 공정성과 중립성의 책무를 다 하는 것임을 촉구합니다.

3) 관련 근거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제5조(공정성), 제6조(형평성), 제7조(소수자에 대한 기회 부여), 제8조(객관성)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일반 심의기준 제4조(공정성), 제5조 (형평성), 제6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제7조(정치적 중립성)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공정성), 제4조(객관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제인권규범「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문화다양성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이루어지고 보장될 수 있다”
방송법 제5조 제1항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33조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CLICK!](#)

KBS의 「공정성 가이드라인」

일반준칙 “공정성은 비례적이거나 산술적인 균형 또는 외견상의 중립성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의를 추구하는 윤리적 자세로 접근할 때 확보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위한 시민행동 안내서

21대 총선, 평등을 위해 일 할 정치인을 뽑읍시다!

- 발 행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 행 일 | 2020년 4월 1일
- 이 메 일 | equalact2017@gmail.com
- 홈페이지 | <https://equalityact.kr/>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